K(✓) CIC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우편번호: 05051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86 (자양동,세경빌딩4층) www.cctv.or.kr

전무이사 백치순 / 부장 채희진 / 전화:02)454-5114 팩스:02)454-5359 이메일: cctv@cctv.or.kr

문서번호 : 한국감시 제23-155호

시행일자: 2023. 4. 14.

수 신 : 조합원사 대표이사(친전)

경 유 : 조달업무담당부서장

선 람		Δ Λ	
접	일자		
수	번호	결 재	
처리부서		· 공 람	
담 당 자			

제 목: TTA인증제품 의무도입 시행 관련 조합대응 등 진행상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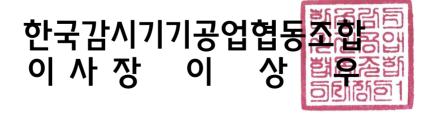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공공 기관에서는 2023. 3. 20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이하 "TTA인증"이라 함)제품을 의무 도입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현재 TTA인증제품 의무도입과 관련된 조합의 대응 및 진행 상황등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TTA인증제품 의무도입 시행 관련 진행상황 안내 1부.

※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www.cctv.or.kr)-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글 참조. 끝.



TTA인증제품 의무도입 시행 관련 진행상황 안내

1. TTA인증제품 도입 시행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정책 일부 변경 시행 통보"(2023. 3. 20 시행)

○ 시 행 일 : 2023 3 20

○ 개정사유 : 보안이 취약한 CCTV 도입 방지 및 보안강화

○ 주요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급기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관의 장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	
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도입할 수 있다.	<u>한다.</u>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관련 기관 및 업계 어려움 발생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개정 시행이 유예기간 등 조치없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 및 각급기관 업무 혼선 발생

ㅇ 각급기관 :

- 당초 지침은 권고사항이었으므로 일부 기관은 TTA미인증 제품으로 계약을 진행하던 중 해당 내용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계약업무 중단 사례 발생
- TTA인증 제품으로 갑작스럽게 설계(규격) 변경하는 사례 발생 등

ㅇ 업계 :

- TTA인증제품 의무사용으로 인하여 TTA인증을 받으려하여도 인증취득까지 과다한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사업차질 발생
- 과도한 인증 취득비용 부담으로 경영악화 우려
- 일부 기관(소비자)에서 소프트웨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어려움 발생
- 인증제품과 일부 기관에서 사용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발생 등 상기 내용외다양한 업계 어려움 및 건의사항이 있음.

3. TTA인증제품 도입관련 조합 대응 경과보고 등

- 주호영 의원실 방문 TTA인증 관련 협의(2023, 3, 23.)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실 방문하여 TTA인증 관련 업계의견 전달 및 협조요청 *조합 이상우 이사장, 백치순 전무이사
 - 주요 전달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개정 시행으로 인한 TTA인증제품 의무사용과 관련하여 제조업체의 인증취득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

1. 시행 유예기간 요구

- 당초 권고사항이었던 내용이 의무사항으로 갑작스럽게 개정 시행되면서 영세제조업체의 대응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 요구

2. 인증취득까지의 소요기간 단축요구

- TTA인증을 받으려 하여도 인증취득까지 과다한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사업차질 발생 (*평균 6~7개월, 신청업체 집중될 경우 1년이상 예상)

3. TTA인증 취득비용 인하요구

- 과도한 TTA인증취득 비용(1개 모델 평균 600~1000만원소요)
- 조달청에 등록하는 카메라의 경우 KC인증, 화질, 환경, 방진·방수 시험성적서가 필수인 상황에서 TTA인증까지 추가될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예상 되며, 이는 생산근로자 고용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임.

4. 인증시험소 확대 요구

- 현재 TTA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1곳에서 독점으로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타 시험기관에서도 TTA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내에 시험소 2~3곳이상 확대 등 대책마련 요구

○ TTA인증 관련 업계 진정·건의서 제출 협조요청(2023.3.30.)

-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국회 및 관계기관 등에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하여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진정·건의서 제출 협조 공문 시행

○ 조승래 의원실 방문 TTA인증 관련 협의(2023.4.3.)

- 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방문하여 TTA인증 관련 업계의견 전달 및 협조요청 *조합 이상우 이사장, 백치순 전무이사

- TTA인증관련 제조업체 간담회(2023,4,10,)
 - 2023. 4. 10(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TTA인증관련 제조사 간담회가 개최됨
- [TTA] IP카메라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인증" 개정 관련 내용 접수(2023.4.11.)
 - 2023. 4. 11(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인증" 관련 개정(안)에 대한 안내가 조합으로 접수됨.
 - 관련 접수 내용

2023년 5월 1일 부터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인증"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4월 시험시료 제출 모델 및 제출 예정 모델은 변경된 제도 적용이 불가

o 기본 모델

변경 전 : 기본 모델이 보안 및 성능품질을 모든 만족해야 함

변경 후 :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0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인증을 위한 시험

변경 전 : 기능(상호연동 제외) 시험을 받아야 함

변경 후

- 보안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동일성 확인 시험
- 보안 및 성능품질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기능(상호연동 제외) 시험. 동일성 확인 시험

o 인증마크

- 보안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보안만 체크
- 보안 및 성능품질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보안 및 성능품질 체크

0 비용

- 보안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대략 300만원
- 보안 및 성능품질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기존대비 대략 180만원 추가

동일성 확인 시험 항목 등 더 자세한 사항은 4월 말에 개최되는 인증심의를 통해 개정(안) 통과 후 인증기준을 배포 예정

-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 후 대응 예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시행 관련 진정·건의(2023.4.12.)

- TTA인증제품 의무도입 관련으로 290여개사로부터 접수받은 진정·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제출하여 협조요청함.
 -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CCTV산업협동조합, 한국통신기기공업협조합 각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안내 접수받은 진정·건의서를 취합하여 우리조합에서 대표로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조합의 진정·건의서를 근거로 국정원에 업계의견 전달 및 대책마련 요구등 진행예정임.

○ 종합쇼핑몰 등록 CCTV 제품에 대한 TTA인증 유예 요청 예정

-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조합의 진정·건의에 근거하여 조달청에 CCTV제품에 대한 TTA인증 유예 건의예정

○ 국정원 주관 TTA인증관련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예정

- 2023. 4. 24 국정원 주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TTA인증 관련 간담회 개최가 예정됨